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5. 11.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하 “HUSS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상지대학교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HUSS사업”이란 교육부 지원 HUSS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말한다.
- “HUSS참여 학생”이란 사업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Credit-T) 또는 HUSS 교과목 수강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또는 사업 컨소시엄(주관대학, 참여대학)의 사업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 및 조직

제4조(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컨소시엄 간 연계 및 협력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 및 관리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 학사제도 개선 제안
-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및 홍보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세부 사업별 업무 추진 및 분기별 추진 실적 관리 및 보고
-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을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②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단에는 사업팀을 둔다.

제6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에 사업기간 동안 사업전담 연구원, 직원 등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사업단의 전담인력 구성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소속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국책사업단장, 기획처장, 교무연구처장, HUSS 사업단장, HUSS 사업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국책사업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 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평가 및 주요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사업의 세부 실행 및 운영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HUSS 사업단장, 부단장, 사업 참여교원, 실무책임자, 실무부서 담당자 및 전담직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본 사업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HUSS 사업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HUSS 사업 부단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관련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 관련 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비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원은 연구재단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기타 외부지원금으로 한다.

- ②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을 적용하되,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을 준용한

다.

제5장 보칙

제10조(세부사항)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사업 개시일(202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결정·수행한 모든 사업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